

학사경고자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 학칙 제 42조 및 학칙시행내규 제30조에 근거한 학사경고자의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는 “학사경고 위험군”과 “학사경고자”로 분류하고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사경고 위험군”라 함은 학사경고를 받지는 않았으나 매 학기 평점평균 1.50이상 2.0 미만의 학업부진을 겪는 고위험군 및 학업에 충실하지 않은 학생을 말한다.
- ② “학사경고자”라 함은 학칙시행내규 제30조(학사경고) 제1항에 의해 매 학기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학사경고 위험군 조기 관리) ① 교무처는 매 학기 성적이 1.50이상 2.0 미만의 학습부진을 겪는 위험군(이하 “학사경고 위험군”이라 한다)을 선별하여 소속학과 학과장에게 전달하고 소속 학과장은 해당 학생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② 지도교수는 2주 이내에 학사경고 위험군의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결과는 해당 학과에 전달하도록 하고 해당 학과는 상담일지를 보관하며 상담에 대한 결과는 교무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③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소속학과 학사경고 위험군 중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 또는 상담취업지원센터에 연계하여 특별관리하여 지도한다.

1. 대상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학습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교수학습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

2. 대상 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상담취업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

④ 학과로부터 학사경고 위험군을 이관받은 교수학습센터 및 상담취업지원센터는 학업 진작을 위해 별도의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이행결과는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학사경고자 관리 절차) ① 교무처는 당해학기 성적처리 마감 후 학사경고자 명단을 해당 학생 소속 학과장에게 전달하고 해당 학과장은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② 지도교수는 2주 이내에 학사경고자 특별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 학생의 부모상담을 시행해야 할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한 일지는 해당 학과에서 보관하며 상담에 대한 결과는 교무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③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소속학과 학사경고자를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상담취업지원센터에 연계하여 특별관리하여 지도한다.

1. 대상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학습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

2. 대상 학생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은 상담취업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

④ 학과로부터 학사경고자를 이관받은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상담취업지원센터는 학사경고자 특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이행결과는 교무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학사경고자 집중 관리) ① 지도교수는 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진행하여 학업증진을 유도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상담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필수로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1. 대상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법 프로그램은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

2. 대상 학생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은 상담취업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